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포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07. 3. 28, 2008. 6. 16〉 제2조(포상시기 및 종류)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.
 -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〈개정 2012. 11. 5, 2018. 4. 4〉
 - 1. 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: 연 1회
 - 2. 우수공무원 표창: 연 1회
 - 3. 선행공무원 표창: 분기 1회
 - 4. 소양고사 우수 공무원에 대한 상장: 연 1회
 - 5. 모범통·반장 표창: 격월 1회
 -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 〈개정 2018. 4. 4〉
 - 1. 순직공무원 표창
 - 2. 시정 시책사업 표창
 - 3.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 - 4. 기타 시장이 인정한 경우
 - 5. 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
- 제3조(포상대상자의 상신)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상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정부표창규정」(대통령령) 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8. 6. 16. 2011. 4. 15〉
- 제4조(위원회 설치 등) ① 표창대상자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ㆍ결정하기 위

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

- 하여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 한다. 〈개정 2007. 3. 28〉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위원은 본청·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4급 국·소장으로 한다. 〈개정 2007. 3. 28〉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, 위원회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〈신설 2007. 3. 28. 개정 2018. 7. 31〉
-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 장,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. 〈신설 2007. 3. 28. 개정 2010. 12. 15〉
-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. 〈개정 2003. 12. 23, 2007. 3. 28〉
- 제5조(심사기준) ①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사·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
 - 2. 공적이 질적 ·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
 - 3. 표창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
 - 4.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
 -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.
 - 1.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
 - 2.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
 - ③ 정부포상 및 장관·도지사표창업무지침에 준한 공·사생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6조(자료제출 등의 요구) 위원회는 공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.

- 제7조(포상자료의 검토) 총무과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대상자를 추천 받은 경우에 제5조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03. 12. 23, 2010. 12. 15, 2018. 9. 4〉
- 제8조(포상방법 등)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광명시인사위원회에 의하여 선발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.
- ③(다른 규칙의 개정) 광명시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조(선발) 모범공무원은 광명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1회 3명 이 내로 선발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1항 중 "매월 1만원"을 "매월 3만원"으로 한다.

부칙〈2003. 12. 23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〈2007. 3. 28 규칙 제899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〉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
16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4항 중 "포상업무 담당"을 "해당업무 팀장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행정지원과장"을 "자치행정과장"으로 한다.

①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〈2011. 4. 15 규칙 제1009호,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2. 11. 5 규칙 제1046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8. 4. 4 규칙 제1181호,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〉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모범공무원 표창: 연 1회"를 "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공무원: 연 1회"로 한다.

제2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「광명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」제2조제2항에 따른 모범공무원 부칙〈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〉

제2조 생략

부칙〈2018. 9. 4 규칙 제1193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〉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 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① 광명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중 "자치행정과장"을 "총무과장"으로 한다.

「별지 제1호 서식〕 제 호 표 창 장 소속 또는 주소 (직) 성명 (표 창 문) 년 월 일 광 명 시 장 [별지 제2호 서식] 감 사 장 소속 또는 주소 (직) 성명 (감 사 문) 년 월 일 광 명 시 장 [별지 제3호 서식] 제 호 상 장 소속 또는 주소 (직) 성명 (상 문) 년 월 일 광 명 시 장

[별지 제4호 서식]

포 상 대 장

	- 0	- 11	- 0	피 포 상 자				- 10 -11	_1,15	
호수	포 상 연월일		포상 기관	직위 또는 직명	소속 또는 주소	성별	성명	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	기념품 또 는 부 상	비고

- 1. 포상대장은 표창장, 감사장, 상장, 모범공무원 표창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.
- 2.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의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.